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9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이훈기 · 이주희 · 허종식

박 정 · 박용갑 · 이병진

오세희 · 김남근 · 박수현

노종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사

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를 “제9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장의 자격요건) 사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학·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또는 그 밖에 교육·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② 사장은 <u>제13조에 따른 이사회</u> 의 제청으로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u> 임명한다. ③ · ④ (생 략) <u><신 설></u>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9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u>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9조의2(사장의 자격요건) 사장</u> 은 <u>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1. <u>교육학 · 방송학 · 언론학 · 전자공학 · 통신공학 · 법률학 · 경제학 · 경영학 · 행정학 또는 그 밖에 교육 · 방송 · 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 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3. 교육·방송·언론 관련 단체 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4. 교육·방송·언론 분야의 이 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 이 되는 사람</u>
--	--